제230회 정례회
2004. 7. 14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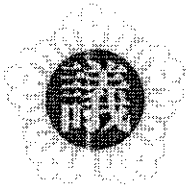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7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(법률 제7100호, 2004. 1. 20)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·주선사업허가 등 도지사 권한의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사무로 변경되고

○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시장·군수 권한의 사무가 도지사 권한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·주선허가 등 12개 사무 삭제
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 관련 수수료 신설

- 사용(신규·변경) 신고 : 1건당 1,400원
-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: 1건당 1,400원

5. 검토의견

○ **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**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
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
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,
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유상운송허가신청 또는
임대허가신청 사무가 시장·군수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 사무로
변경됨에 따라
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